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
----------	------

발의연월일 : 2016. 8. 29.

발의자 : 안규백 · 김해영 · 문희상  
이찬열 · 이춘석 · 윤호중  
이동섭 · 김경협 · 원혜영  
김정우 · 전혜숙 · 김진표  
고용진 · 윤관석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온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회를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제2호).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2호 중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 (생략)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p> <p>1. (생략)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u>위원</u> 또는 <u>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u>            3. (생략)</p>	<p>제10조의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위원</u>            3. (현행과 같음)</p>